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수도권전기공업고등학교의 기숙사 명칭은 「수재학사」로 하고, 이 규정은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이하 ‘수재학사 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학생들에게 면학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기 주도적이고 규칙적인 공동생활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향상시키며 학생들을 근면 성실하고 창의적인 에너지 분야의 마이스터로 육성한다.

제3조(운영기간) 학칙에 따라 규정된 수업기간에 따라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4조(구성) 수재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조직을 둔다.

- ① 교직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학생 대표로 구성된 「수재학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재학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운영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안전복지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하며, 업무 담당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전자결재 문서로 보관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생활안전복지부 기획교사, 수재학사 업무담당교사, 행정실장, 수재학사 담당 주무관, 사감(1명), 학부모대표(1명), 학생대표(남녀 각 1명)으로 구성한다. (단, 학부모대표 및 학생대표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참여한다.)
- ② 학생들이 규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공동체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재학사 학생자치회(이하 ‘학생자치회’)를 둔다.
 1. 학생자치회는 자치회장 2명(남 1/여 1), 각 학년대표 6명(남 3/여 3), 3학년 위원 2명으로(총 10인) 구성한다.
 2. 자치회장과 각 학년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며, 3학년 위원(2명)은 사감 추천에 의해 선발한다.
 3. 교칙을 위반한 학생자치회 위원에 대하여 학교 차원의 교육적 처분과 더불어 학생자치회 임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수재학사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기숙사비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입사 및 퇴사 전반에 관한 사항
4.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숙사의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수재학사 학생자치회는 필요시 수시로 모임을 갖고 수재학사 운영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규정 제·개정, 생활 프로그램 개설·변경 시 의견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수재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 ① 수재학사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
-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사감) 학교장은 원활한 기숙사 운영을 위하여 사감 3명을 임명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기숙사의 개관 및 휴관과 관련된 각종 업무
- ② 학생의 입·퇴사를 위한 행정 처리(외출과 외박 포함)
- ③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
- ④ 학생의 호실 배정 및 비상연락망 파악
- ⑤ 학생들의 상점과 별점 관리
- ⑥ 규칙적인 생활을 위한 점호 및 야간 취침지도
- ⑦ 기숙사 내에서의 생활지도 및 순회지도
- ⑧ 기숙사 일지 작성 등 기숙사 운영과 관련된 공문 처리
- ⑨ 기숙사 화재 대피 훈련과 관련된 업무
- ⑩ 소방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와 비상구 개폐 작동 점검
- ⑪ 기숙사 위생지도 및 환경관리 : 대청소 계획 수립 및 지도 등
- ⑫ 외부인 출입 통제(방문자 인적사항 및 용건 기록, 방문 목적 이외의 행위 제한)
- ⑬ 기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사감의 유의사항 등) 사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 ① 학생 간에 발생한 학교폭력(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 ② 기숙사 내에서의 음주
- ③ 기숙사 내에서의 도난 사건
- ④ 학생의 입사 또는 퇴사에 대한 결정
- ⑤ 학생의 자율 시간과 취침 시간에 대한 조정
- ⑥ 학교장 허락 없이 사생의 보호자 소환
- ⑦ 학생을 개인적으로 심부름시키는 일
- ⑧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의 금품수수
- ⑨ 기타 사회 통념상 사감의 직무로 볼 수 없는 행위 등

제3장 입사 및 퇴사

제9조(입사 대상 및 선정 기준)

- ① 본교 입학생 중 지방 중학교 출신의 신입생을 입사대상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입사할 수 있다.
 1. 입학 이후 지방으로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통학에 불편을 겪는 자 (가족 전체 구성원의 주소지 이전 사실 공문서 확인 필요)
 2. 가정환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수재학사 입사를 필요로 하는 자 (관련 증빙서류 확인 필요)
 3. 운영위원회에서 입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제10조(입사인원) 수재학사의 입사 정원은 200명이며, 입사 정원대비 충원율 90%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단, 수재학사 운영위원회를 통해 충원율을 10%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

제11조(입사 자격의 제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기숙사의 입사 자격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① 감염성 질환 또는 정신 질환으로 다른 학생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자
- ② 본 규정에 따라 명령퇴사 처분을 받은 자
- ③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입사 제한을 결정한 자

제12조(입사 절차) 수재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① 입사회망자는 학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입사가 결정된 학생은 지정된 기한 내에 지역보건소에서 결핵 등 감염성 질환에 관한 진단을 받아 확인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 기숙사 생활 안내와 호실을 배정 받는다.

제13조(퇴사)

- ① 퇴사는 영구퇴사와 임시퇴사로 구분되며, 임시퇴사는 자진퇴사와 명령퇴사로 구분한다.
 - ② 영구퇴사는 취업, 징계 등의 퇴사 사유 발생시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재입사할 수 없다.
 - ③ 임시퇴사는 해당 사유에 따라 일정기간 퇴사하며, 이후 재입사할 수 있다.
 - ④ 자진퇴사는 제14조에 의하여 입사자 개인의 의지로 퇴사하는 것을 말한다.
 - ⑤ 명령퇴사는 운영위원회가 수재학사 질서 유지를 위해 제15조에 의거하여 결정한 퇴사를 말한다.
1. 명령퇴사의 경우에도 학생 및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자진퇴사)

- ① 자진퇴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전학, 유학, 휴학, 제적을 이유로 퇴사를 원하는 자
 2. 건강상의 이유로 공동생활을 할 수 없어 가정요양 혹은 격리가 필요한 자
 3. 체험학습을 신청한 자
 4. 가족 및 친척의 경조사가 있는 자
 5. 학교폭력 등의 사안과 관련되어 분리조치가 필요한 자
 6. 기타 학교가 퇴사를 인정하는 자
- ② 자진퇴사는 가급적 퇴사 희망일 일주일 이전에 퇴사신청서와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 해당 증빙서류를 사감에게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퇴사한다.

제15조(명령퇴사)

- ① 수재학사 운영위원회는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이 명령퇴사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1호와 2호는 생활교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1주간 명령퇴사
 - 1) 수재학사 생활평점제에 따른 누적 벌점 40점 이상이 된 자
(명령퇴사 조치 후 벌점 40점 소멸)

- 2) 무단외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연락이 두절된 자
 - 3) 무단외박을 한 자
 - 4) 기타 동등 수준의 과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2주간 명령퇴사
- 1) 음주, 흡연, 환각제 및 향정신성 약물 복용
(소지자는 1주간 명령퇴사와 함께 특별교육 실시)
 - 2) 상습적 절도 및 금품 갈취
3. 2~4주간 명령퇴사
- 1) 학교폭력 행위(학교폭력예방법 참조)
 - 2) 교권침해 행위(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참조)
 - 3) 수재학사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자
 - 4) 불법행위로 법원 등 공공기관의 보호관찰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4. 각호의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중대사안 발생 시 또는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이 결정된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1~4주간 명령퇴사 조치한다.
- ② 명령퇴사 누적 기간이 5주를 초과한 자는 영구퇴사에 처한다.

제16조(퇴사 절차) 퇴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학생은 호실을 깨끗이 청소한 후, 점검을 받는다.
- ② 손실 및 망실 물품을 확인하고 손·망실 확인 시 이에 대해 정산한다.
- ③ 행정실에 방문하여 기숙사비, 식비 등을 정산한다.
- ④ 공용물품을 반납하고,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퇴사한다.

제4장 입사학생 관리

제17조(점호) 점호는 학생들의 인원과 건강 유무 및 시설의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야간 점호 이후 외출은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생들에게 위압감이나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방식의 점호는 지양한다.
- ③ 학생은 점호 시 점호자의 지시나 요구 등에 따른다.
- ④ 시험기간, 주말 등 상황에 따라 약식으로 점호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사고 예방) 사감 등 기숙사 관리 관계자는 학생과 관련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을 따른다.

- ① 학생의 기숙사 출입과 외출 및 외박 관리를 위하여 정해진 양식으로 내용을 정리한다.
- ② 외부인의 기숙사 출입은 사전에 학교와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점호시간을 준수하되, 부득이 하거나 약식점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호실 대표로 하여금 점호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다.
- ④ 사감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 ⑤ 학생들의 생활상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의함을 설치·운영한다.
- ⑥ 학생들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⑦ 학생이 개인적으로 전기용품을 사용하도록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사학생의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전기품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⑧ 기숙사의 방화기구 및 비상구는 수시로 확인한다.
- ⑨ 학생 간 폭력 발생을 미리 인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에 알려야 한다.
- ⑩ 기숙사 내외의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한다.
- ⑪ 시설물 점검 결과 조금이라도 학생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학교장, 기숙사 관리 관계자 및 학생들에게 알리고 해당 시설에 대한 접근을 통제한다.
- ⑫ 학생과 사감 간의 연락 체제를 구축하고, 학생들에게 안내 및 홍보해야 한다.
- ⑬ 입사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각 호실별로 해충이나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의 유무 등을 점검한다.(입사학생들의 사전 양해 구할 것)
- ⑭ 사감실에는 비상약과 주변의 응급 의료원 및 관련 경찰서와 소방서의 연락망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⑮ 사감실에 음주·흡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비치하고 필요시 사용한다.

제19조(사고 조치) 사감 등 기숙사 관리 관계자는 입사학생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다음에 따른다.

- ① 사고 발생 시 환자 유무 확인 및 환자 응급처치를 최우선적으로 한다.
- ② 다만, 환자의 상태가 심한 출혈, 탈골, 골절 등 위험할 경우, 응급처치 전문 능력이 없을 경우 함부로 환자를 일으켜 세우거나 움직이게 해서는 아니 되고 인근의 의료 기관이나 119에 도움을 요청한다.
- ③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경우 사감 또는 기숙사 관리 관계자 등 보호자가 동행하며, 현장 수습 및 나머지 입사학생 관리도 빈틈없이 한다.
- ④ 다만, 사안이 큰 경우에는 학교장 또는 수사기관의 현장 정리 요청이 있기 전에는 현장을 정리하지 말고 보존하여야 한다.
- ⑤ 사회적 통념상 경미한 사고(단순 찰과상 등)를 제외한 사고는 발생 즉시 학교장과 해당 보호자에게 알린다.

- ⑥ 거액 또는 고가의 물건 도난사고 시 학교장 및 위원장 등 관계자에게 보고한 후 함께 조치 방법을 결정한다.
- ⑦ 학생 간에 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맡겨야 한다.
- ⑧ 안전사고에 따른 치료비는 학교 차원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청한다.

제5장 수재학사 생활 수칙

제20조(일반적 사항) 수재학사는 공동생활 장소이므로 입사학생은 타인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타인의 생활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 1. 개인의 취미 활동이나 건강관리 차원의 활동이 타인의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2. 몸을 청결히 하고, 개인의 의류 등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3. 독서실 이용 등 취침시간 이후 활동시 잠든 학생들을 배려하여 행동한다.
 - 4. 개인적으로 애완동물을 키우서는 안 된다.
- ② 공동 생활을 위하여 기초질서를 유지한다.
 - 1. 공공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다.
 - 2. 전기와 물 등 공공재를 절약한다.
 - 3. 창문 밖으로 쓰레기, 음식물 등 이물질을 던지지 않는다.(창문 유격 등 임의 조작 금지)
 - 4. 등교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퇴실 시 냉난방 상태를 확인하여 정지시키고 최종 퇴실자가 소등한다.
 - 5. 변기에 휴지 등 이물질을 버리지 말고(비누, 칫솔, 과일 등 주의), 변기가 막히면 사감실에 준비된 압축 기구를 이용하여 해결한다.
 - 6. 호실의 공용물품을 수시로 확인하고 훼손 상태 발견 시 즉시 사감실에 신고한다.
 - 7. 기숙사 시설물을 임의로 변용하거나 보조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8. 비기숙사생을 동반하여 입사하지 않는다.
- ③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 1. 학교폭력(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2.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을 하지 않는다. (소지 포함)
 - 3. 화투, 카드 등 사행성 도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온라인 포함)

④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한다.

1. 호실 내에서는 전열기 및 화기 사용, 촛불 점등은 일절 금한다.

2. 성냥,ライター, 초 등의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반입하지 않는다.

⑤ 특정 질환이 있는 자, 특이체질자, 특정 약을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자 등은 미리 사감에게 알린다.

⑥ 잡상인의 출입, 폭력 발생, 응급환자 발생, 기타 긴급 상황 등 학교 측에 알려야 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사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⑦ 기숙사 출입 시에는 반드시 사감 등 기숙사 관리 관계자에게 신고한다.

⑧ 비상 상황 발생 시, 사감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⑨ 현금 등 귀중품을 호실 내에 방치하지 않는다.

⑩ 사감의 지도를 존중한다.

⑪ 기타 건전한 기숙사 생활문화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

제21조(자기주도학습)

① 자기주도학습은 호실 및 독서실에서 실시한다.

② 독서실에서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독서실의 운영시간은 01시까지이며, 단 시험기간 등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영시간을 연장 혹은 단축할 수 있다.

제22조(출입통제)

① 수재학사 및 호실은 외부인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학생의 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학교가 정한 일과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만 개방한다.

② 수재학사 개방은 출입문이 개방된 시간이라도 호실 출입은 제한될 수 있다.

③ 개방 시간 외에 호실 출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감실에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④ 수재학사 및 호실의 개방은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외출)

① 외출은 당일 복귀를 전제로 한 학교 밖으로의 출타를 말한다.

② 외출 시에는 기숙사 사감실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외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1. 직계가족 경조사

2.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하여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개인의 자격검정 또는 학교를 대표하여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학습이나 봉사활동을 위한 경우
5. 기타 외출이 필요하다고 사감이 판단한 경우

제24조(외박)

- ① 외박은 1박 이상 체류를 전제로 한 기숙사 밖에서의 숙박을 말하며, 선택외박과 의무퇴사로 나눈다.
- ② 선택외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학교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은 다음, 사감실에서 보호자와의 유선 확인 절차를 거쳐 허용한다.
 1. 직계가족 및 친인척 경조사
 2.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하여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학교가 허용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의무퇴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교에서 정한 횟수에 따라(매달 0~2회) 기숙사 환경정비와 개인정비를 위하여 의무퇴사를 실시한다.
 2. 의무퇴사 후 입사는 해당 주 일요일 20:00까지 완료한다.
 3. 정당한 입사지연 사유가 있을 시 사감에게 보고하고 허락받아야 한다.

제25조(면회) 면회는 사감실에서 신청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해진 장소에서 실시한다. 단, 호실에서의 면회는 금한다.

제6장 수재학사 생활평점제 운영

제26조(목적) 기숙사의 질서 유지, 입사학생의 민주시민의식 함양, 준법정신 제고, 안정된 공간조성을 위하여 생활평점제를 운영한다.

제27조(적용 근거 등)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호, 학교 교칙에 따른다.

제28조(상벌 기준의 원칙)

- ① 입사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상벌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입사학생의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다.
- ③ 입사학생들의 준법정신, 질서의식, 봉사정신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 ④ 입사학생의 선도는 해당 학생과 타 학생의 입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도록 한다.

- ⑤ 공정한 생활평점제 운영을 위하여 입사학생자치회 의견수렴 절차를 둔다.
- ⑥ 상별점 항목 내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수시 점검 및 학생의견 수렴한다.
- ⑦ 별점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일관적으로 적용한다.
- ⑧ 상별점 적용 내용을 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 생활평점제가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제29조(상별점운영)

- ① 상별점 항목 및 기준은 “<별표 1> <별표 2> 상·별점 기준”과 같다.
- ② 상별점 부과자는 사감으로 한다.
- ③ 상별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
 1. 상점으로 별점을 상쇄할 수 없다.
 2. 별점은 최종 별점일로부터 30일 동안 별점 없이 생활한 경우 최대 10점까지 자동 소멸된다.
- ④ 개인별 상별점 기록은 학교 및 학부모에게 통지할 수 있다.
- ⑤ 학기별로 상점과 별점을 종합하여 우수 학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 ⑥ 누적 별점에 따라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제30조(이의신청) 별점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점부과 후 2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① <별표 3>의 이의제기 신청서 제출(학생 또는 학부모)
- ② 사감, 기숙사 관리 관계자의 협의 후 승인
- ③ 승인결과 통보 및 기록수정

제7장 규정의 개정

제31조(규정의 개정)

- ① 운영위원회 또는 학생자치회의 발의에 따라 규정을 제·개정 할 수 있다.
- ② 규정의 제·개정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수도전기공업고-4530(2024.04.02.))

2.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제15조, 제18조의 변경사항은 202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4. 제15조 1항 2호 변경사항은 2024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